

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사단
법인

대한철인3중협회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철인3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정관 제38조에 따라 이사회
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제 2 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.

1. 대회운영위원회
2. 경기력향상위원회
3. 국제홍보위원회
4. 선수위원회
5. 스포츠공정위원회
6. 인사위원회
7. 심판위원회
8. 생활체육위원회
9. 의료위원회
10. 기타 정관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는 위원회

제 2 장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

제 3 조(구성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3명 이하
3. 위원 7명 이상 11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제 4 조(위원의 위촉 등) 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자
로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

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정관 제30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2.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(경기력향상위원회에 한정한다).

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 5 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6 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7 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제 8 조(회의의 소집 등)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9 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.

제10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제척 및 기피)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2조(경비의 지급)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·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장 각종 위원회의 기능

제13조(대회운영위원회)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
제14조(경기력향상위원회)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
2.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대비 강화훈련계획 수립
3.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
4. 체육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
5. 국가대표선수 훈련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
6.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, 감독,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7.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
8. 국가대표 훈련 참가임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
9.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선수단 전형 추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

제15조(국제홍보위원회) ① 국제홍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협회의 스포츠외교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
2. 국제대회 및 회의 등의 국내유치 관련 제반사항
3. 국제트라이애슬론계에 대한 협회 홍보 및 스포츠 외교활동 전개

4. 올림픽운동과 관련하여 주요 국제기구 및 관련자와의 관계 촉진 및 증진
 5. 국제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제스포츠교류 강화에 기여
 6.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
 7. 국내 및 국제 대회 홍보에 관한 사항
 8.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 9.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
 10. 국내 체육 발전을 위한 스포츠언론단체에 관한 사항
 11. 마케팅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 12. 협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13. 기타 체육 홍보와 관련된 사항
- ② 국제대회 국내유치의 경우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선수위원회) 선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,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보급·확산
2. 선수 권익 보호,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3.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
4.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
제17조 (스포츠공정위원회)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
제18조 (인사위원회)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
제19조 (심판위원회)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